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9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서영교·이상직·김민철

강준현 • 박성준 • 송기헌

이성만・양정숙・김승원

윤미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 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에 출입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천안 9세 아동 여행가방 감금·사망사건에서 피해아동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병원 진료를 받았고 병원측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도 있었지만, 경찰은 신고 당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아동은 사망하였음.

이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 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08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를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 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7087호 아동학대범죄의 법률 제1708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현장출동) ① (생 략) 제11조(현장출동) ① (현행과 같 음)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 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 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 -----피해아동을 학대로부 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장소에서 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 관계인에 대하여 -----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 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 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 문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